#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유용원·백종헌·임이자

이헌승 • 이인선 • 조승환

김승수 · 서범수 · 안철수

주진우 · 신동욱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경찰공무원법」, 「소방공무원법」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, 「공무원 재해보 상법」에 따른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 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, 소방관이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에는 순직유족 연금,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 신한 공무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 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2항, 제38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).

##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 또는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 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 또는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 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4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 또는 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월 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,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4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순직유족연금) ① (생	제36조(순직유족연금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	②
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	
<단서 신설>	다만, 공무원이 사망한 후 「국
	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
	제5호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9
	조의3제1항제5호, 「경찰공무원
	법」 제19조 또는 「소방공무
	원법」 제17조에 따라 특별승
	진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특
	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
	<u>정한다.</u>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제38조(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) ①	제38조(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다	②
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	
으로 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공무원이 사망</u>
	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
	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
	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
	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 또는

1. • 2. (생략)

제43조(사망조위금) ①·② (생 폭 략)

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로 하고, 제2 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 로 한다. <단서 신설>

	'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
	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
-	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
	준으로 산정한다.
	1.•2. (현행과 같음)
제.	43조(사망조위금) ①·② (현행
	과 같음)
	③
	<u>다만, 공무원이 사망</u>
-	한 후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
	조의4제1항제5호, 「지방공무원
	법」 제39조의3제1항제5호,
	「경찰공무원법」 제19조 또는
	「소방공무원법」 제17조에 따
	라 특별승진된 경우 기준소득
	월액은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
	준으로 산정한다.